

#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006
----------	------

제출년월일 : 2005. 2. 23.

제 출 자 : 고성군수

## 1. 개정이유

2005. 6. 30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인 주민지원과를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여유기구)으로의 전환과 재난관리 전담부서 신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환경 우선행정 및 푸른 고성을 조성하기 위해 업무·기능중심의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재난관리 기능강화를 위한 「재난안전관리과」 신설(안 제3조제2항제12호)
- 나. 환경우선 행정 및 기능강화를 위한 「환경녹지과」를 “환경과+녹지공원과” 분리(안 제3조제2항제8호, 안 제3조제2항제9호)
- 다. 도시과+건설과 ⇒ “건설도시과” 통합 개편(안 제3조제2항제11호)
- 라. 지역교육발전 및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담당 신설(안 제3조제2항제1호)
- 마.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공무원단체담당 신설(안 제3조제2항제2호)
- 바. 개별주택가격 평가를 위한 과표담당 신설(안 제3조제2항제5호)
- 사. 주민지원과(한시기구)를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여유기구)으로 전환(안 제4조)
- 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친환경농업담당 신설(안 제10조제17호)
- 자.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명칭 변경(안 제13조제2호)

##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및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여유기구제 도입 등 기구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2004.12.18)

## 4. 본 문

- 덧붙임과 같음

##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한다.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2조 내지 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과장의 직급 등)** ①군 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과장 등 보조기관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직급,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장 군 본 청

**제3조(실·과의 설치)** ①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부군수 직속으로 기획감사실을 두고 행정과·종합민원실·문화관광과·재무과·지역경제과·사회복지과·환경과·녹지공원과·해양수산과·건설도시과·재난안전관리과를 둔다.

②실·과장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 1. 기획감사실장

가. 군정 기획조정·분석평가·지시사항, 의회업무 총괄, 제안제도 및 시책토론회에 관한 사항, 기타 실과간의 업무조정

나. 조례 및 규칙의 제정·개폐, 통계조사·연보발간, 행정자료실운영, 행정소송·심판에 관한 사항

다. 공약사업추진 총괄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라. 예산의 편성 및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경영개발 및 수익 등에 관한 사항

마. 본청 및 산하기관·단체(법령상 감독의무)에 대한 감사와 상급 자치단체 및 기관의 수감, 직원의 비위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 바.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 구성 및 소관사무에 관한 사항
- 사. 교육발전추진위원회 운영 및 교육(학교)·인재육성기금에 관한 사항
- 아. 청소년보호 및 선도생활과 건전한 청소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2. 행정과장

- 가. 조직·인사업무, 읍·면 지도감독, 상훈, 선거, 행정구역 조정, 주민여론과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나.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
- 다. 의식·행사, 복무·직장보수교육, 후생복지, 문서, 공인, 보안·비상대책, 군민의 날 행사(문화체육부문 제외) 및 군민상에 관한 사항
- 라. 대외협력 및 교류, 자치단체의 자매결연사업에 관한 사항
- 마. 전산정보·통신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바. 주민여론·동향관리·군정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
- 사. 동학혁명 명예회복 및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에 관한 사항
- 아.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 자. 혁신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 차. 공무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 카. 읍면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에 관한 사항
- 타. 주민자치회 운영
- 파. 군민의식개혁 및 건전생활운동 추진

## 3. 종합민원실장

- 가. 민원행정 종합기획추진과 민원제도개선,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 나. 주민등록·인감·호적관리 및 외국인 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
- 다. 농지전용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라. 개발행위 인·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마. 지적공부 및 지적전산자료, 토지소유권, 토지등기촉탁 등과 제증명 발급에 관한 사항
- 바. 지적측량, 토지분할, 지목변경, 지적등록에 관한 사항
- 사. 지가결정, 토지거래, 부동산가격 통제에 관한 사항
- 아. 건축물대장 보관·관리 운용, 건축허가 및 지도단속, 농촌주택과 취락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 자. 각종 인허가 업무(복합민원 등)
- 차.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

## 4. 문화관광과장

- 가. 문화재 및 사찰의 보호관리, 종교업무, 문화·예술진흥의 종합기획 추진에 관한 사항

- 나. 군민의 날 행사(문화체육부문) 및 각종문화예술행사 추진 등에 관한 사항
- 다. 관광기획·개발 및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
- 라. 체육진흥 및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 마. 엑스포기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바. 고성군문화체육센터 및 체육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5. 재무과장

- 가. 세수증대 종합기획, 도·군세 부과 및 세무조사,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
- 나. 도·군세 징수 및 납세홍보, 군 금고 감독, 세외수입 총괄, 군 수입증지
- 다. 세출예산의 경리·결산, 도급계약, 유가증권 수납보관에 관한 사항
- 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국·공유재산관리, 물품출납보관,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 마. 개별주택가격 평가에 관한 사항

#### 6. 지역경제과장

- 가.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기획 조정에 관한 사항
- 나. 통상·수출업무 총괄, 물가안정, 저축, 상공에 관한 사항
- 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 라. 노동조합 관련업무, 실업대책 및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 마. 중소기업지원,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바. 석유·가스·전기·계량에 관한 사항
- 사. 교통행정의 종합기획·조정, 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 7. 사회복지과장

- 가. 사회복지시책 총괄기획,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관리,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보훈, 장애인복지, 이재민구호, 건강보험관리공단지사지원·감독에 관한 사항
- 나. 여성복지 증진 및 여성단체 육성,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 다. 노인복지행정의 종합기획·추진,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묘지· 화장장· 납골당 관리에 관한 사항, 새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관리
- 라.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 8. 환경과장

- 가. 환경보전종합기획,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환경공해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 나. 청소행정의 총괄기획·조정, 폐기물 관리·지도·감독, 자연보호 활동에 관한 사항
- 다. 고성군생활폐기물 처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라. 대기환경 및 보전에 관한 사항

#### 9. 녹지공원과장

가. 조경 및 가로수 식재관리, 조림, 양묘사업, 사방 및 임도시설, 전원화사업, 산촌개발 사업, 산림내 토·사석 채취 허가, 임업단체 지도 감독

나. 육림사업, 산림병해충 방제, 보호수 관리, 야생조수 보호, 산불 방지, 산지정화

다. 등산로개발, 산악박물관, 휴양림조성 등 산지자원개발 및 소득에 관한 사항

라. 도·군립공원, 도시·녹지공원 조성계획 및 조성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마. 자연발생유원지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0. 해양수산과장

가. 수산진흥 종합기획,어선,어민후계자,어로시설,수산물 유통, 어민 교육, 수협 및 어촌계에 관한 사항

나. 양식어장, 어업피해예방,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다. 수산자원보호 지도단속 및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공유수면 관리(구거 제외), 유·도 선(내수면)장 관리

라. 연안관리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마. 해양레저 개발에 관한 사항

## 11. 건설도시과장

가. 전문건설업 면허 및 건설사업장 관리, 지하수 개발에 관한 사항, 건설교통부 소관 재산 관리

나. 도시계획사업, 온천개발,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다. 타 실·과 소관 각종사업의 설계 및 기술지도, 읍면 건설행정 기술 지원

라. 농업기반시설 조성·관리, 농어촌 정주권 사업에 관한 사항

마. 군도·농어촌도로 관리(비 법정 도로 포함), 노점 및 노상 적치물 단속업무에 관한 사항

바. 건설공사용 용지매수 및 토지수용, 군도·농어촌도로 부지보상 및 등기

사.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 12. 재난안전관리과장

가. 재해·재난예방, 비상대책의 종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나. 방재시설물 관리, 하천관리(구거 포함)에 관한 사항

다. 기타 재난안전관리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라. 민방위에 관한 사항

마. 공익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바. 120만원기동대 운영, 상조민원처리, 농어촌보안등·가로등 설치 및 관리

사. 기타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처리

**제4조(여유기구)** 다음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여유기구로 해군교육사령부유치단을 둔다.

1. 골프장 유치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해군교육사령부 유치 및 민자유치에 관한 사항
3. 재외향우, 출향인 등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제3장 직속기관

### 제1절 보건소

**제5조(설치)** ①법 제104조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 보건소를 설치하고, 보건소의 산하기관으로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소장 등)** ①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원을 둔다.

②보건소장은 군수의,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원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소관사무)** ①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된 소관사무와 식품·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 단속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②보건지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국민 보건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4. 결핵·나병·성병 등 전염병의 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항
5. 일반진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건행정에 관한 사항

③보건진료원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8조(설치)**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 및 지도사업·농민교육 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센터의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77-1번지에 둔다.

**제9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진흥 총괄기획, 농업진흥기금 지원사업 등 추진, 농업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2. 농지이용·보존 및 농지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정부양곡 관리 및 수급계획 추진, 농산물 유통, 특산물생산 장려 및 판매에 관한 사항
5. 농업 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영양식품 가공조리 보급 및 농어촌생활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7. 농업현장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8. 식량작물 증산 및 우량품종 보급에 관한 사항
9. 소득개발 특화사업, 경제작물 지도에 관한 사항
10. 농업경영 분석 및 정책에 관한 상담 지원
11. 농업환경개선·실태조사·분석, 종합검정실 운영 및 IPM사업지도에 관한 사항
12. 지역특화 작목의 기술개발 및 지역특성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13. 축산진흥 종합기획, 가축개량증식, 축산단지 관리 및 종축관리, 축산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14. 가축위생 및 방역, 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15. 가축 사양관리기술 지도, 가축질병에 관한 사항, 특수 가축 사육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
16. 농산물 수출에 관한 사항
17. 친환경농업에 관한 사항

## 제4장 사업소

**제11조(설치)** ①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소장)** 사업소에 각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지관리사업소

- 가. 당항포관광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연화산도립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 다. 상죽암군립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 라. 공룡전시관 시설유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마. 「2006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2. 상하수도사업소

- 가. 하수·분뇨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상·하수도사업의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다. 기타 먹는 물에 관한 사항

## 제5장 읍 면

제14조(설치) ①법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읍·면의 사무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5조(직무) 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호적·주민등록 업무, 민원서류발급, 이·반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16조(읍·면장) 읍·면에는 읍·면장을 두며, 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중 “환경녹지과”을 “환경과, 녹지공원과”로 “건설과, 도시과”를 “건설도시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한다.

②고성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환경녹지과장”을 “환경과장, 녹지공원과장”으로 “도시과장”을 “건설도시과장”으로 한다.

③고성군립공원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환경녹지과장”을 “녹지공원과장”으로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건설도시과장”으로 한다.

④ 고성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환경녹지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환경과장, 녹지공원과장, 건설도시과장”으로 한다.

⑤ 고성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도시과장, 환경녹지과장”을 “환경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⑥ 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건설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⑦ 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제3항중 “건설과장”을 각각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⑧ 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도시과장”을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

[별표 1]

□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명칭·위치·관할구역(제5조 제3항 관련)

명 칭	위 치	관 할 구 역
고성군보건소	고성읍 대독리 4	고성군 일원
삼산면보건지소	삼산면 미룡리 263-3	삼산면 일원
하일면보건지소	하일면 학림리 739-8	하일면 일원
하이면보건지소	하이면 덕호리 513-12	하이면 일원
상리면보건지소	상리면 척번정리 805	상리면 일원
대가면보건지소	대가면 송계리 504-4	대가면 일원
영현면보건지소	영현면 침점리 354	영현면 일원
영오면보건지소	영오면 양산리 242-3	영오면 일원
개천면보건지소	개천면 예성리 146	개천면 일원
구만면보건지소	구만면 광덕리 821-3	구만면 일원
회화면보건지소	회화면 배둔리 1138-2	회화면 일원
마암면보건지소	마암면 도전리 462-3	마암면 일원
동해면보건지소	동해면 장기리 348-5	동해면 일원
거류면보건지소	거류면 당동리 134-2	거류면 일원
삼산면장치보건진료소	삼산면 장치리 119	삼산면 장치, 두포, 포교, 와도, 중촌, 상촌, 하촌
하일면수양보건진료소	하일면 수양리 420	하일면 수양, 용대
하이면덕명보건진료소	하이면 덕명리 335	하일면 춘암, 맥전포, 동화 하이면 덕명, 입암, 정곡
하이면봉현보건진료소	하이면 봉현리 132	하이면 봉현, 외룡, 남산
대가면신전보건진료소	대가면 신전리 701-1	대가면 신전, 외갈, 내갈, 종생
대가면연지보건진료소	대가면 연지리 177	대가면 평동, 지동, 양화
영현면봉발보건진료소	영현면 봉발리 278-1	영현면 추계, 봉발1, 봉발2, 금능
개천면청광보건진료소	개천면 청광리 499	개천면 청동, 청남, 나동, 가천, 차치
회화면어신보건진료소	회화면 어신리 924	회화면, 석전, 산북, 어신
마암면신리보건진료소	마암면 신리 92-7	마암면 신리, 신지, 성전, 석마, 감동
동해면장좌보건진료소	동해면 장좌리 302	동해면 상장, 하장, 우두포, 구학포
동해면매정보건진료소	동해면 용정리 445-1	동해면 내신, 전도, 대천, 좌부천, 매정, 가룡

[별표 2]

□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제11조 제2항 관련)

사업소명	위치
관광지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57번지 고성군 고성읍 송학리 1-1번지